

<첨부1> 정관 일부 변경 신구조문 대조표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행	변경(안)	비고
제2조 [목적] 1.~77. (생략) 78. 전 각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일체의 부대사업 (신설)	제2조 [목적] 1.~77. (좌동) 78. 통신판매중개업 79. 전 각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일체의 부대사업	사업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
제13조 [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]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13조 [기준일] ① (삭제) ② (좌동)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주주명부 폐쇄규정 삭제
제50조 [이익배당]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2항에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	제50조 [이익배당] ① (좌동)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,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
제51조 [중간배당]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	제51조 [중간배당]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
(신설)	부 칙 이 정관은 제7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	